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29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이재강·김문수·정일영

허성무 • 이재정 • 채현일

박홍근 • 박희승 • 이성윤

유종군 • 한정애 • 민홍철

윤건영 • 이건태 • 이용선

박지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 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 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등) (생 략)	제6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u>야 한다.</u>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